

# 캘리포니아 내 사업체: 캘리포니아 사용세 금액 확인 방법

간행물 123-K | 2017년 1월

SEN. GEORGE RUNNER (Ret.)  
제1지역  
Lancaster

FIONA MA, CPA  
제2지역  
San Francisco

JEROME E. HORTON  
제3지역  
Los Angeles County

DIANE L. HARKEY  
제4지역  
Orange County

BETTY T. YEE  
주 회계 감사관

DAVID J. GAU  
전무 이사



## 캘리포니아 내 사업체: 캘리포니아 사용세 금액 확인 방법

본 간행물은 실물 상품(예를 들어, 필수품, 가구, 설비 및 장비)을 주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 내야 하는 사용세를 확정하기 위해 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해당 사업체가 사용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 외부에 소재한 판매자로부터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들을 구매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내야합니다.

사용세는 주외 판매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에 실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는 캘리포니아 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세는 또한 주 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들이 캘리포니아 내 외부의 지역별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주 및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조달에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외 판매상으로부터의 구매하는 경우 언제 사용세를 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실물 제품을 주외 판매자로부터 캘리포니아 내에서의 사용, 보관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내야 합니다. 만일 주외 판매자가 구매에 대하여 사용세를 징수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조세형평국(BOE)에 해당 사용세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판매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주외 판매자가 캘리포니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매 금액, 세금 액수, 판매자 이름, 주소, 및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 번호(또는 사용세 등록 번호), 그리고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주외 판매자들은 보통 주 공통 세율(현재 7.25%)로 세금을 적용하지만, 구매자는 자신이 해당 상품을 최초로 사용할 때 캘리포니아 내의 장소에서 유효한 완전 세율로 사용세를 내야합니다. 해당 장소가 특별세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해 유효한 완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 공통 세율 + 지방세율). 판매자가 구매자의 소재지에 유효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한 경우,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나머지 사용세를 내야 합니다. 특정 분야의 세율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도시 및 카운티 판매 및 사용세율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캘리포니아 사용세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매입 송장을 검토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실물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세가 적용되고, 주외에 소재하는 사업체로부터 유사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세가 적용됩니다. 주외 소매업자로부터 받은 구매 청구서를 자세히 검토하여 만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매업자가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징수했는지 그리고 액수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이전 섹션 참조). 일반 원장의 자산 계정과 연방 소득세 신고서의 감가상각 명세서를 검토 하면 일부 과세대상 구매 건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용세 납부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의무이며, 조세형평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만일 해당 판매자가 판매자 허가서 또는 사용세 등록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질적인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주외 판매자가 귀하의 구매 건에 대해 사용세를 납부하였고 따라서 전체 또는 일부 세금에 대해 귀하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체에 연락하여 해당 업체가 조세형평국에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 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사용세 납부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의무이며, 조세형평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만일 해당 판매자가 판매자 허가증 또는 사용세 등록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허가증이 없거나 BOE에 사용세 납부용 계정이 없다면, 귀하의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서 (아래 참조)에 신고한 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외 판매자가 귀하의 구매 건에 대해 사용세를 납부하였고 따라서 전체 또는 일부 세금에 대해 귀하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체에 연락하여 해당 업체가 조세형평국에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 하십시오.

### “운송 및 취급” 비용에도 캘리포니아 사용세가 부과됩니까?

운송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세됩니다:

1. 일반 운송이나 계약 운송 또는 미국 우편을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
2. 청구서에 배송료, 운송료, 운임 또는 우편료가 별도의 비용으로 명확하게 나열된 경우
3. 해당 비용이 실제 배송료보다 크지 않을 경우\*

\*실배송료를 확인하려면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실비용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소비자는 세금이 붙은 품목의 구입과 관련하여 전체 배송료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초 세 가지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선적 비용은 일반적으로 과세됩니다. 만일 "취급수수료"가 선적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 중 취급수수료 부분은 과세됩니다. 재판매를 위한 판매와 같은 비과세 판매와 관련된 배송료와 취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행물 100, *출하 및 배송료*).

## 캘리포니아 사용세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 •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

판매자 허가증을 보유하고 계시면,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당 항목을 처음 사용, 보관 또는 소비한 날짜를 포함하는 기간에 대한 신고서의 "사용세가 부과되는 구매"하의 구매금액을 입력하십시오. 판매자 허가증을 발급받을 때, 세금 신고서를 분기별 또는 분기별 사전 납부 기준 중 하나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 및 납부 기한은 각 보고 기간의 마감 이후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분기별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귀하의 1 분기 신고기간은 3월 31일에 마감되므로, 귀하의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은 마감 익월 마지막 날인 4월 30 일입니다.

### • 사용세 보고를 위해 필요한 등록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거 "자격 있는 구매자"는 BOE 에 등록해야 하며, 연간 보고를 하고 BOE 에 직접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BOE 웹사이트 [www.boe.ca.gov](http://www.boe.ca.gov), 에서 신규 등록을 선택한 다음 BOE에 사업 활동 등록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BOE 현장 사무소 어디든지 방문하여 사용세 신고를 위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 있는 구매자"에는 사업운용에서 연간 총 수입이 적어도 \$100,000 달러 이상인 사업체가 포함됩니다. 총 수입은 캘리포니아주 내부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외부의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을 포함합니다. 자격 있는 구매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전 년도 중에 사용세 부과 대상인 유형 상품의 총 구매가격에 대한 사용세 및 사용세를 징수해야 하는 소매업체에게 지불하지 않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는 익년 4월 15일이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신고서 및 세금 납부는 2014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간행물 126, 서비스 기업을 위한 의무적인 사용세 등록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귀하에게 BOE 허가증이 없다면, 사용세를 귀하의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한 후 FTB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세 표는 FTB 소득세 신고서를 위한 사용안내서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귀하의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세를 신고하도록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사용세표는 \$1,000달러 미만의 개인 구매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업용 구매에는 사용할 사용세를 BOE 에 전달합니다. 귀하가 자격 있는 구매자일 경우, 사용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BOE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수 없습니다. 사용세 부과대상인 사업용 구매는 실제 사업용 구매 영수증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세 신고 기한은 귀하의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사용세 채무가 발생한 날짜는 귀하의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된 세무연도 이내이어야 합니다. FTB는 징수된 사용세를 BOE에 전달합니다. 귀하가 자격 있는 구매자일 경우, 사용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BOE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 소비자 사용세 계정

만약 귀하가 캘리포니아 외부 판매업체로부터 과세 대상 구매를 자주하고 사용세 계정에 "자격 있는 구매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면, BOE 에 등록하신 다음 소비자 사용세 계정을 만들어 사용세 과세 대상 구매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BOE 웹사이트 [www.boe.ca.gov](http://www.boe.ca.gov) 에서 신규 등록을 선택한 다음 BOE에 사업 활동 등록을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BOE HYPERLINK "<http://www.boe.ca.gov/info/phone.htm>"현장 사무소 어디든지 방문하여 사용세 신고를 위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 차량, 선박 및 항공기

상기 품목의 구매에는 특별 규정과 보고요건이 적용됩니다. 규정 1610, 차량, 선박 및 항공기와 다음 간행물들을 참조하십시오.

- 간행물 52-S, *차량 및 선박: DMV 등록을 위한 사용세 납세 증명서 요청 방법.*
- 간행물 79-S, *등록 선박과 캘리포니아 세금.*

- 간행물 79A-S, *항공기와 캘리포니아 세금*.

또한 BOE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로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 **1회 구매에서 사용세 납부 대상 구매**

만약 판매자 허가증이 없고 자격 있는 구매자로서 사용세 계정에 대해 등록할 필요가 없으면, BOE 웹사이트 [www.boe.ca.gov](http://www.boe.ca.gov) 에서 신규 등록을 선택한 다음 사용세 납부 및/또는 1회 구매에 대한 목재 제품 평가를 선택함으로써 사용세 과세 대상 구매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BOE 현장 사무소 어디든지 방문하여 사용세 신고를 위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 이루어진 구매에 대한 사용세의 납기는 그 다음 연도의 1월 31 일 까지이며,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구매에 대한 사용세의 납기는 귀하가 해당 자산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구매하여 사용한 그 다음 연도의 4월 15일 까지 입니다. 납기일 이후에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자가 부과됩니다. BOE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로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십시오.

## 더 자세한 정보

더욱 자세한 정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십시오.

###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TTY:711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전화 주시면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외에, 다른 언어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장 사무소

도시	지역 코드	번호
Bakersfield	1-661	395-2880
Culver City	1-310	342-1000
El Centro	1-760	352-3431
Fairfield	1-707	427-4800
Fresno	1-559	440-5330
Glendale	1-818	543-4900
Irvine	1-949	440-3473
Norwalk	1-562	466-1694
Oakland	1-510	622-4100
Rancho Cucamonga	1-909	257-2900
Rancho Mirage	1-760	770-4828
Redding	1-530	224-4729
Riverside	1-951	680-6400
Sacramento	1-916	227-6700
Salinas	1-831	754-4500
San Diego	1-858	385-4700
San Francisco	1-415	356-6600
San Jose	1-408	277-1231
Santa Clarita	1-661	222-6000
Santa Rosa	1-707	576-2100
Ventura	1-805	677-2700
West Covina	1-626	480-7200

### 주 외부 현장 사무소

Chicago, IL	1-312	201-5300
Houston, TX	1-713	739-3900
New York, NY	1-212	697-4680
Sacramento, CA	1-916	227-6600

### 자동차 운송업자 사무소

W. Sacramento, CA	1-800	400-7115
-------------------	-------	----------

### 인터넷

[www.boe.ca.gov](http://www.boe.ca.gov)

여러분의 사업에 법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추가 정보 즉, 법률, 규정, 양식, 간행물, 정책 매뉴얼 등을 찾아 보기 위해 BOE 웹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 허가증 번호를 BOE 웹사이트에서 확인 하거나 ("Verify a Permit/License(허가증/라이선스 확인)" 참조) 또는 BOE 수신자 부담 자동 확인 서비스에 1-888-225-5263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간행물의 다국어 버전은 BOE 웹사이트 [www.boe.ca.gov](http://www.boe.ca.gov) 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개업과 같은 여타 정보에 대한 이용처는 [www.taxes.ca.gov](http://www.taxes.ca.gov) 의 캘리포니아 세금 서비스 센터입니다.

### 세무 정보 고시

분기 세무 정보 게시판 (TIB)에는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한 법의 적용에 관한 글, 신규 및 개정 간행물 발표, 기타 관심글이 포함됩니다. 현재 및 과거 TIB를 BOE 웹사이트 [www.boe.ca.gov/news/tibcont.htm](http://www.boe.ca.gov/news/tibcont.htm)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BOE 업데이트용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시면 TIB의 최신판이 BOE 웹사이트에 게시될 때 통지를 하여 드립니다.

### 무료 강좌 및 세미나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BOE 현장 사무소에서는 기타 언어로 된 강좌를 비롯하여 무료 기본적인 판매 및 사용세 강좌를 제공합니다. 강좌 및 장소의 목록은 BOE 웹사이트 [www.boe.ca.gov](http://www.boe.ca.gov) 에서 판매 및 사용세 정보 섹션(Sales and Use Tax Section)을 확인하십시오. 또는 강좌 정보에 대해 지역 현장 사무소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및 사용세 기초강좌 및 세금 신고 방법 등 언제나 BOE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제공합니다. 일부 온라인 강좌는 다른 언어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서면 세무 조언

귀하의 보호를 위해, 서면 세무권고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세형평국이 부정확한 서면 권고를 했고 납세자가 해당 권고에 의존하여 결과적으로 알맞은 세금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조세형평국이 판단한 경우, 거래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과태료, 또는 이자 비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제가 적용되려면, 권고 요청이 서면으로 되어야 하며, 해당 권고가 적용되는 납세자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사실 및 상황이 전부 기술되어야 합니다.

세금과 수수료에 관한 일반적인 서면 권고를 받으시려면, BOE 웹사이트 [www.boe.ca.gov/email](http://www.boe.ca.gov/email) 를 방문하셔서 이메일로 요청하십시오.

또한 우편으로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목재 제품 과세 또는 선불 모바일 전화 서비스(MTS) 부가세를 포함하는 판매세 및 사용세 일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 주소로 요청서를 보내주십시오.

Audit and Information Section, MIC:44  
State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4

그 외 다른 모든 특별세 및 수수료 정책에 관한 서면 권고가 필요하시면, 다음 주소로 요청서를 보내주십시오.

Program Administration Branch, MIC:31  
State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1

### 납세자 권리보호 사무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더욱 자세히 알고 싶거나 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예; 감독관에게 말하기)에는, 간행물 70, *캘리포니아 납세자로서 여러분의 권리 이해하기*를 참조하거나, 또는 납세자 권리보호 사무실 1-916-324-2798 (또는 수신자부담전화 1-888-324-2798) 로 전화 주십시오. 팩스 번호는 1-916-323-3319 입니다.

원하실 경우에는 다음의 주소로 서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 MIC:70 State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 규정, 및 간행물

### 간행물에 따른 다양한 목록

귀하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선택된 규정, 양식 및 간행물이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판매 및 사용세 규정, 양식 및 간행물의 전체 목록은 저희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저희 간행물의 다국어 버전과 기타 다국어 지원 자료 또한 [www.boe.ca.gov/languages/menu.htm](http://www.boe.ca.gov/languages/menu.htm)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규정

- 1628 교통 요금
- 1684 소매업자의 사용세 징수
- 1685 구매자의 세금 납부
- 1686 소매업자에게 세금을 납부했다는 내역 이 포함된 영수증
- 1823 거래(판매)세 및 사용세 적용
- 1827 소매업자의 사용세 징수

### 간행물

- 79 적하 명세서가 제공된 선박과 캘리포니아 사용세
- 79A 항공기와 캘리포니아 세금
- 100 선적 및 배송료
- 110 캘리포니아 사용세 기초
- 126 서비스 기업을 위한 의무적인 사용세 등록

Publicaciones disponibles en su idioma  
以您的母語出版的出版物  
**Các Ấn Phẩm Có Sẵn Trong Ngôn Ngữ Của Quý Vị**  
귀하의 언어로 된 간행물이 있습니다

본 번역 간행물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지 영문판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문판과 본 번역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의 내용이 우선합니다.